

경기복지재단 공고 제2025 - 3호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복지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복지재단 신입직원채용 공개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1 채용예정인원

직종	세부직종	직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계				2
공무직	연구직	연구원(나)급	일반	1
공무직	연구직	연구원(나)급	보훈	1

※ 직무기술서, 보수, 복리후생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및 직무역량평가(16점), 종합평가(4점)를 실시합니다. ※ [붙임1] 평정표 참고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만점의 60% 이상 득점(가산점 포함)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예비합격자를 1배수만큼 선발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8점), 조직적응력(8점), 종합평가(4점)를 실시합니다. ※ [붙임2] 평정표 참고
- 시험시간은 1인당 5~10분씩 소요되며, 그룹(다:다)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1명일 경우 개별(다:1)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만점의 60% 이상 득점(가산점 포함)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합니다.
- 예비합격자를 1배수만큼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공무직(연구직) 연구원(나)급	일반 /보훈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사회복지학	4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비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2.23.)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의 한 성범죄 경력자(신설 2019.12.23.)

제3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60세이며 퇴직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단, 전문계약직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06.01.)

나.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구분모집	자격요건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취업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공무직(연구직) 연구원(나)급	일반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해당분야 : 사회복지 관련 분야</p>
공무직(연구직) 연구원(나)급	보훈	<p>‘나.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해당분야 : 사회복지 관련 분야</p>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가산점 적용 유형 모두 해당시 모두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서류 및 면접시험의 시험(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장애인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에도 해당할 경우, 인정비율을 합산하여 중복으로 적용합니다.(만점의 최대 15%)

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2. 25.(화)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3. 11.(화) ~ 3. 17.(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4. 3.(목)
	필기시험	2025. 4. 12.(토)
	접수사전공개	2025. 4. 22.(화)
	합격자 발표	2025. 4. 29.(화)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5. 5. 16.(금)
	합격자 발표	2025. 5. 21.(수)
면접시험	자격요건 증빙자료 제출	2025. 5. 22.(목) ~ 5. 26.(월)
	면접시험	2025. 5. 30.(금)
	합격자 발표	2025. 6. 4.(수)
임용등록 및 서류검증	임용등록서류 제출	2025. 6. 5.(목) ~ 6. 9.(월)
	합격자 발표	2025. 6. 17.(화)
임용	임용	2025. 7. 1.(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통합채용 누리집 : 3. 5.(수) 개설 예정**
 ⇨ **경기도 및 각 기관 누리집 게시판에서 ‘통합채용 누리집’ 주소 안내**

-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자격요건 증빙자료(개별 안내)
- (2)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면접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면접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통장 사본 1부
 -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급여 및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서류이므로 발급기준일을 명시함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본부(수원) 및 북부센터(의정부)로 **순환보직**될 수 있습니다
- 자. 수습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며, 근무평가 이후 최종적으로 임용됩니다.
- 차. 보수 및 수당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환산하여 「경기복지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전자우편(recruit@ggwf.or.kr) 제출)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